고용노동부	보 도 자 료	안전망강화 한국판뉴딜

보도일시	2021. 9.6. 조간 * 인터넷 2021. 9.6. 06:00 이후	/ 총 3쪽	
담당부서	서울북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	센터장 남현주 팀 장 박규옥 주무관 주화영 주무관 임순아	02-2171-1850 02-2171-1801 02-2171-1805 02-2171-1800

< 본 자료는 http://www.work.go.kr/seoulbukbu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2차 추경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간 및 물량 확대
사업주 여러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

□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(서울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)은 **실직근로자 고용촉진 및 기업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전국 15천명을 목표로 「특별고용촉진장려금」을 지원하고 있다.**

○ **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** 위해 **'21년 2차 추경에 4만명에서 5.5만명으로 확대* 반영하였다.**

* 2차 추경 : (기존) 2,401억원, 4만명 → (추가) +643억원, +1.5만명

□ **고용(특별)촉진장려금은 '21년 7월 말 기준 1,486개소에 53억원을 지원하였으며,** 전년 동기 대비 **94개소** 4억원 지급하여 **지원기업은 14배, 지급금액 12배로 각각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**

* 최근 3년간 지급 추이(백만원): ('19년) 844 → ('20년) 2,542 → ('21년 7월) 5,286

○ **지원요건은 1개월 이상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**에게 **1인당 월 최대 100만원*을 6개월 간 지원하며,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한다.**

* 급여의 80%한도로 최고액 월 100만원* 6개월, 무기계약전환 채용시 추가 6개월 지원

□ 또한, 신청 시 **채용 및 신청 시기, 지급주기 등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.**

○ 기존에는 '21.3.25~9.30.기간동안 신규채용하고 '21.12.15까지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지원대상이었으나,

○ 금번 2차 추경을 통해 금년 '21.1.1~3.24 기간동안 신규 채용하여 '21.10.31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도 소급해서 지원 가능하며,

- 또한, 지원기간을 확대하여 금년 '21.10.1~12.31 기간동안 채용하여 '22.8.31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도 추가 지원하며, 우선지원대상기업 뿐만아니라 중견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한다.

◆ 사업기간 및 신청기간

구분	사업기간(채용)	신청기간	비 고
2차	'21.1.1. ~ '21.3.24.	'21.8.17.~'21.10.31.	2개월 단위 신청
	'21.10.1. ~ '21.12.31.	'21.11.1.~'22.8.31.	1개월 단위 신청가능
1차(기존)	'21.3.25~'21.9.30	~'21.12.15	2개월 단위 신청

□ 지원금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서, 증빙서류(근로계약서, 임금대장, 임금지급증빙서류 등) 등을 구비하여,

○ 우편 또는 방문* 하거나 고용보험홈페이지**(www.ei.go.kr) 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.

* 주소: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60 현대빌딩 2층(노원역 6번 출구에서 150m)

** 기업회원 로그인>기업서비스>고용창출장려금>'고용촉진' 선택 후 해당 사항 입력 후 전송 ⇒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(기업지원부서) 접수 및 처리

□ 최상열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장은 "이번 2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이 지속되는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주고,

○ 실직자 취업 지원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내 기업에 제도 안내문 발송, 기업 설문 조사를 통한 맞춤형 종합컨설팅 제공 및 유관기관 협력 등을 통해 제도 홍보에 적극 노력할 것"을 밝혔다.

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서울북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박규옥 팀장(☎02-2171-1801), 주화영 주무관(☎02-2171-1805), 임순아 주무관(☎02-2171-1800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**고용촉진장려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비교**

* 1차 추경(1차), 2차 추경(2차)로 표기

구 분		고용촉진장려금	특별고용촉진장려금 (중소·중견기업 채용보조금)	'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(추가안)
지원근거		①시행령제26조 ②시행규칙제44조 및 제45조 ③고용창출장려금·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	①시행령제26조제1항5호 및 제8항 ②(개정)고용창출장려금·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	좌동
지원목적		통상적 조건 하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 장려금을 지급	좌동	좌동
시행기간		계속('04~)	'20.7.27.~'20.12.31. (기간내 채용된 자에 대해 6개월 지원)	(1차) '21. 3.25~'21. 9.30. (2차) '21. 1. 1~'21. 3.24. '21.10. 1~'21.12.31.
지원대상	공통	①구직등록+②실업자	좌동	좌동
	지원자격	①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②중증장애인(1개월 이상 실업) ③가족부양 여성가장(1개월 이상 실업) ④섬지역 거주자(1개월 이상 실업)	①~③ 또는 (추가)④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업자 -2.1.이후1개월이상실업자 -6개월이상장기실업자	①~③ 또는 (추가)④ 1개월 이상 실업중인자
	유효기간	프로그램 이수(①) 후 1년 이내 고용된 자(※②,③,④는 제한 없음)	'20.12월말까지 고용한 자에 대해 '21.9.30.까지 지원신청	(1차) '21. 5.25.~'21.12.15. (2차) (上) '21. 8.17.~'21.10.31. (下) '21.11.1.~'22. 8.31.
지원수준		①우선지원: 월 60만원 ②대규모: 월 30만원	①우선지원: 월 100만원 ②중견: 월 80만원	(1차) 우선지원: 월 100만원 (2차) 우선지원·중견: 월 100만원
지원기간		1년	6개월 + 6개월* * 무기계약직 전환 채용시 추가 지원	좌동
지급주기		6개월	3개월(월할 가능)	2개월(월할 가능) * 단, '21.10.1~12.31 채용자 1개월
지원한도		직전년도 피보험자 수 30% - 3년간 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 수 →(개정)직전년도 피보험자수30%	직전년도 피보험자 수 100% (3인미만은 3인)	좌동
지원제외	사업주	①임금 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②1년 이내 동일(관련) 사업주 ③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	①임금 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②3개월이내 동일(관련)사업주 ③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등	좌동
	근로자	①1년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 ②비상근 촉탁근로자 ③최저임금액 미만자 ④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	①6개월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 ②비상근 촉탁근로자 ③최저임금액 미만자 ④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	좌동 (추가)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(F-2,5,6는 지원)
감원방지		고용 전 3개월+고용 후 1년	고용 전 1개월+고용 후 6개월	좌동
예산	인원	12,450명	50,000명	55,000명: (1차) 40,000명, (2차) 15,000명(上-1만명, 下-5천명)
	예산	49,244백만원(492억원)	247,290백만원(2,473억원)	'21년 304,410백만원
	근거	(11,200명×3,995천원)+ (750명×3,600천원)+ (500명×3,600천원)	(47,200명×120만원×5월)+(2,800명×60만원×5월)+50백만원	지원금 304,290백만원 운영비 120백만원 * 10.1이후 계속고용 지원분의 일부는 '22년 예산반영